

심사보고서

충청북도 중장년 일자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

충청북도 중장년 일자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

심 사 보 고 서

의안
번호

222

2023. 3. 24.(금)
산업경제위원회

1. 심사경과

- 가. 발 의 자 : 이양섭 의원 등 7인
- 나. 발의일자 : 2023년 3월 3일
- 다. 회부일자 : 2023년 3월 6일
- 라. 상정일자 : 제407회 충청북도의회(임시회) 제2차 산업경제위원회
(2023년 3월 22일 상정의결)
- 마. 주요내용 : 제안설명, 검토보고, 질의답변, 심사의결(원안가결)

2. 제안설명 요지 (제안설명자 : 이양섭 의원)

가. 제안이유

- 충청북도에 거주하는 중장년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취업과 창업 등 일자리 사업을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

나. 주요내용

- 중장년 일자리 지원계획 수립(안 제3조)
- 중장년 일자리 지원사업(안 제4조)
- 중장년 일자리 지원사업에 대한 행정적·재정적 지원(안 제5조)
- 중장년 일자리 지원사업에 관한 위탁 등(안 제6조)

3.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(산업경제위원회 수석전문위원 신복순)

가. 이 조례안은 도내 중장년의 일자리 창출 등 지원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구체적 근거를 마련한 것으로 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 사회 안정을 위한 적절한 입법이라 생각됨

나. 그동안 조례 제정을 위해 간담회와 토론회를 통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였고, 경제통상국 일자리정책과 등 관련 부서와 협의와 조례안 예고에 따른 의견 조회 등 행정적 절차를 추진하였는데, 절차적 타당성 측면에서도 적절하다고 판단됨

4. 질의 및 답변요지 : 없 음

5. 토 론 요 지 : 없 음

6. 심 사 결 과 : 원안가결

7. 소 수 의 견 요 지 : 없 음

8. 기타 필요한 사항 : 없 음

9. 심사보고서 첨부서류

○ 충청북도 중장년 일자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

충청북도 중장년 일자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충청북도에 거주하는 중장년의 새로운 취업 기회 확대, 창업 컨설팅 등 일자리 지원을 통한 중장년의 삶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"중장년"이란 충청북도(이하 "도"라 한다)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50세 이상 65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.

제3조(지원계획 수립) ① 충청북도지사(이하 "도지사"라 한다)는 중장년의 일자리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충청북도 중장년 일자리 지원계획(이하 "지원계획"이라 한다)을 수립·시행하여야 한다.

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.

1. 중장년 일자리 지원사업의 기본방향
2. 중장년의 취업 및 창업에 대한 현황
3. 국가 및 도에서 추진하는 중장년의 취업 및 창업 교육 등 지원 현황
4.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
제4조(지원사업 등) 도지사는 중장년의 취업 및 창업 등 일자리 지원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중장년 일자리 지원사업(이하 "지원사업"이라 한다)을 시행할 수 있다.

1. 중장년의 직업능력개발 교육에 관한 사업
2. 중장년의 창업 인큐베이팅 및 마케팅 지원에 관한 사업
3. 중장년 취업 및 창업 관련 기관 간의 연계구축에 관한 사업
4. 중장년 취업 및 창업 관련 홍보사업
5.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

제5조(일자리 지원) 도지사는 지원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관련 기관이나 단체에 필요한 행정적·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.

제6조(위탁 등) 도지사는 지원사업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지원사업을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.

제7조(표창) 도지사는 중장년 취업 및 창업에 공적이 있는 자에 대하여 표창할 수 있다.

부 칙

이 조례는 2023. 7. 1. 부터 시행한다.

관련법령 발취

□ 지방자치법

제28조(조례)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. 다만,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.

② 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은 그 법령의 하위 법령에서 그 위임의 내용과 범위를 제한하거나 직접 규정할 수 없다.

충청북도 중장년 일자리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에 따른 비용추계서

1. 사업개요

- 충청북도 중장년의 고용을 촉진하고, 사회참여와 근로소득의 기회를 보다 많이 제공함으로써 활기차고 안정적인 생활을 영위하는데 기여하고자 중장년 일자리 창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.

2. 비용 발생 요인

- 중장년 일자리 지원사업 추진에 따른 비용 발생

3. 관련 조문

- 충청북도 중장년 일자리 지원에 관한 조례
 - 제4조(지원사업 등) 도지사는 중장년의 취업 및 창업 등 일자리 지원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중장년 일자리 지원사업(이하 “지원사업”이라 한다)을 시행할 수 있다.
 1. 중장년의 직업능력개발 교육에 관한 사업
 2. 중장년의 창업 인큐베이팅 및 마케팅 지원에 관한 사업
 3. 중장년 취업 및 창업 관련 기관 간의 연계구축에 관한 사업
 4. 중장년 취업 및 창업 관련 홍보사업
 5.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

4. 비용 추계결과

가. 추계의 전제

- 추계기간 : 2023년부터 2027년까지 5년간으로 함
- 재정수반 요인 : 충청북도 중장년 일자리 지원에 관한 조례
 - 제5조(일자리 지원) 도지사는 지원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관련 기관이나 단체에 필요한 행정적·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.

나. 추계결과

○ 산출과정(1년간)

- 신중년 사회공헌 사업 : 558,880천원
-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 사업(6개 사업)
 - 찾아가는 기업현장지원반 : 180,000천원
 - 중소기업 기초컨설팅 지원사업 : 1,377,000천원
 - 중소기업 R&D 역량강화 지원 사업 : 887,600천원
 - 내일을 잇는 희망일터 지원단 : 165,880천원
 - 수출 FTA 자문관 활용 현장지원 : 600,000천원
 - 온라인 마케팅 전문가 활용 지원 : 100,000천원
- 중장년 고용지원 사업 : 330,000천원
- 중장년 일자리희망센터 특화사업 지원 : 40,000천원
- 중장년 일자리 박람회 : 20,000천원

○ 산출결과 : 2023년부터 향후 5년간 21,296,800천원 소요

다. 재원조달방안

○ 자체사업(도비 100%)

- 신중년 사회공헌 사업(전환)
- 중장년 고용지원 사업
- 중장년 일자리희망센터 특화사업 지원
- 중장년 일자리 박람회

○ 보조사업(국비 50%, 도비 50%)

-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 사업(6개 사업)
 - 찾아가는 기업현장지원반
 - 중소기업 기초컨설팅 지원사업
 - 중소기업 R&D 역량강화 지원사업
 - 내일을 잇는 희망일터 지원단
 - 수출 FTA 자문관 활용 현장지원
 - 온라인 마케팅 전문가 활용 지원

